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61
----------	-------

발의연월일 : 2025. 9. 22.

발 의 자 : 고동진 · 박준태 · 이달희
강승규 · 안상훈 · 송석준
박덕흠 · 최수진 · 진종오
백종헌 · 김대식 · 김상훈
강대식 · 배현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쿨링시스템 등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에서는 그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이에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인공지능산업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하여 배치함(안 제5조).

나. 인공지능산업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규제안을 마련할 때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 대상이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아닌,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한하게 하며, 사업자 측의 ‘자발적인 규제안’의

마련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규제를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존 규제에서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함(안 제7조).

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업계 또는 산업계 등에서 위촉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산업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의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는 동시에,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반도체의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및 생산 사업자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제2항).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인프라 환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기준에 따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

한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안 제23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확률·통계 등의 기초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안 제29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진흥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인공지능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5.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범용적으로 광범위한 사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계 학습 또는 딥러닝 등 사전의 학습 과정을 거친, 정부, 국가기관 및 인공지능사업자 측의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6. “인공지능반도체”란 인공지능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경망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등의 반도체를 말한다.
7. “오픈소스”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코드와 알고리즘을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8. “범용 인공지능”이란 모든 지적 영역에 대한 수행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이 국가의 미래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혁신을 장려 및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인공지능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아닌, 기술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산업인 반도체산업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진흥 및 발

전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 설치) ① 대통령의 인공지능산업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을 둔다.

② 인공지능산업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인공지능산업 규제 유연성 확보 및 합리화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안을 마련할 때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안을 마련할 때에는 그 대상이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아닌,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자발적인 규제안의 마련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전면적 규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규제를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존 규제에서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

라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특례에 관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능동적인 규제 면제 및 완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규제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 처리에 대한 특례)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활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인공지능반도체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반도체, 데이터, 전력망 등 유무형 인프라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인공지능산업 데이터의 산업별 표준화 연계 적용 및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범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실증 등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반도체의 신경망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등간 효율적 활용의 배분,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0. 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사업자 지원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
 12. 인공지능산업의 안보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산업의 연구개발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인력 교육, 확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5. 인공지능기술이 연계되는 관계 산업 분야의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인공지능산업의 해외전문인력 확보 및 유치에 위한 전략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
 17.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8. 인공지능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19.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

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공지능산업 발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산업 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측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 부처 업무 조정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의 시책 시행) 정부는 국내의 인공지능산업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산업의 독립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산업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해당 모델에 기반한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의 개발 등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및 적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준에 따라 관련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할 때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차별 또는 격차를 야기하면 아니 된다.

제16조(인공지능반도체의 우선 확보 및 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활용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산의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에 따라 중소·중견·스

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반도체의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및 생산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인공지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반도체 사업자에게 설계 및 활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보완 조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인공지능사업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인공지능서비스 및 오픈소스 개발 등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 시행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①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지

원 및 안보 시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2. 인공지능산업에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지원
3. 인공지능산업의 독립적인 역량 구축과 인공지능산업의 주권 확립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4.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인공지능 거버넌스로의 전환 방안 수립 지원
5. 인공지능산업의 안보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6.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및 실증 등에 관한 지원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8.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산 인공지능반도체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그 밖에 학교,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공공기관의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①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해당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인공지능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인프라 환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기준에 따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센터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거래 특례)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전력

거래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동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거래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공지능산업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및 훈련 시책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인공지능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에 위한 특별사증 발급 및 정주 환경 지원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사증의 대상, 종류, 신청, 발급, 체류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인재의 주택 등 정주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인공지능 분야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재정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분야의 국내외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인공지능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편입·전직에 대한 특례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한다)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 그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해당 병역지정업체로의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지정하여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전직 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시행) ①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내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국가장학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장학제도의 대상 학교는 국내·외의 대학 및 대학

원으로 하며, 해당 청년이 학교 졸업시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 인공지능사업자의 근무지역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장학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확률·통계 등의 기초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